

## ○○○고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관련 지체상금 반환 청구

소송종류	민사소송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 [2심]	사건유형	지체상금반환
원고	□□□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판결선고일	2024. 10. 30. 원고일부승	비고	[1심] 2023. 10. 11. 원고일부승
사건개요	<p>○ 원고는 2021. 5. 24. ○○교육지원청과 ○○○고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22. 1. 27. 준공예정이었으나, 2021. 9. 29. 공사계약 연부액 변경, 기상악화에 따른 공사변경계약으로 2022. 2. 23.까지로 연장하였고, 2022. 5. 31. 준공정산 결과 2,324,214,200원으로 총공사금액이 변경되었음. 공사변경계약에 의해 지체일수 총 82일, 지연배상금 95,292,780원을 공제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건축공사 착공 전 선행되어야 할 전기 단전 및 철거 공사가 56일 동안 진행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침에 따라 공사를 15일간 연장, 정부지침에 따른 동절기(12. 20. ~ 다음해 2월 말) 공사 중단기간인 52일도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산정한 지체상금 산출 내역(지체일수: 82일, 지체상금: 95,292,780원)이 잘못 산출되었다며 소를 제기함.</p>		
주문	<p>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538,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0.부터 2024. 10. 3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p> <p>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p> <p>3. 소송총비용 중 1/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p>		
1심 및 2심 판결요약	<p>○ ① 피고와 한국전력공사 사이의 전력공급계약이 2021. 8. 30. 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기존 기숙사 건물의 철거를 완료한 날은 2021. 7. 13.이므로 그 전에 전기단선공사는 완료된 것으로 보임. ② 피고는 2021. 6. 17. 삼도전력공사와 이 사건 학교 증축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1. 6. 29. 단선공사를 완료함. ③ 전기 단선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임시전력 사용신청이 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는 2021. 6. 30.부터 기존 기숙사 건물의 철거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 상 공사 시작 예정일인 2021. 6. 2.부터 2021. 6. 29.까지 28일 동안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됐다고 볼 수 있어 지체일수에서 공제되어야 함.</p>		

**결 론**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함.